

제 호

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

1. 명칭 :
2. 대표자 :
3. 소재지 :
4. 양성과정의 등급 :

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산림청장

직인